

## ▣ 사회책임투자 (SRI) 펀드의 역할과 책임

1. SRI 펀드의 투자성격
2. SRI 펀드의 현황과 성과
3. 국내 SRI 펀드 투자현황
4. SRI 펀드의 인프라 구축
5.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역할과 책임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1. SRI 펀드의 투자성격

1980년대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던 시절에 얼핏 들은 말이 기억난다. 당시 대학이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주식 등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시설을 확충하고 훌륭한 교수들을 영입한 결과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교 순위도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남아공의 주식이나 남아공과 교역하는 기업의 주식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이미 투자기능과 사회책임을 결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책임투자(SRI)는 소액주주운동가로 유명한 장하성교수가 미국의 라자드가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의 자문을 맡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하는 사회책임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같은 중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적인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들고 있다.<sup>1)</sup>

즉, 생산, 판매, 유통 및 폐기에 걸친 전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종업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그리고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원칙을 유지하며, 지배구조면에서는 이사회를 통한 경영정책의 수립 등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는가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1920년대 미국의 감리교회가 윤리적인 면을 투자에 접목해 주류와 담배, 도박 등 ‘죄악주식(sin stock)’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한데서 출발했다. 1928년에 개설된 ‘파이오니어 펀드’(Pioneer Fund)는 죄악주식을 배제한 최초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60년대의 공익성 강조, 1970년대의 반인종차별을 거쳐 1980년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을 투자에 고려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펀드가 출현했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위험을 투자에 반영함에 있어 사회책임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SRI는 점차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SRI펀드의 투자방법은 일반 펀드와 유사하지만 주로 ESG요소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선호 대상을 정하거나 혹은 투자기피 대상을 정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환경 친화적이고 도덕적이며 경영의 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예로는 유럽의 대표적인 SRI 투자운용사인 ISIS가 운영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친구들 펀드’가 있다. 이 펀드의 규모는 약 1조원 이상으로 새로운 대체에너지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한다. 유럽의 또 다른 대형 투자사인 주피터가 운영하는 ‘주피터 글로벌 SRI 펀드’나 ‘주피터 글로벌 녹색투자 펀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내 복지정책,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요소를 검토해 투자판단에 반영하고 있다. 환경 파괴적이나 반사회적인 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예로는 미국의 ‘노던트러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설정한 수단펀드(Sudan-free portfolio)를 들 수 있다. 이 펀드는 수단에 투자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내전 중에 있는 수단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지배구조개선펀드와 같이 단순한 투자대상선정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해 기업에게 사회책임을 요구하는 SRI펀드도 있다.

### 2. SRI 펀드의 현황과 성과

SRI펀드에 대한 정의 및 시장요인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계 산정과 비교는 어렵다. SRI 단체인 사회투자포럼(SIF: Social Investment Forum)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SRI펀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SRI펀드 규모는 2005년말 기준으로 2조2,900억 달러로 10년 동안 258% 이상 성장했다. 미국 전체 펀드 규모 24조4천억 달러의 9.4% 수준에 해당하는 미국의 SRI펀드에서 약 70퍼센트 이상이 기업활동 감시·감독(Social Screening)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주주행동(Shareholder Advocacy), 지역사회 투자(Community Investing)이다.<sup>2)</sup> 미국의 사회책임투자(SRI) 규모는 <표 1>과 같다.

<표 1> 미국의 사회책임투자(SRI): 1995-2005 (단위: 10억 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기업활동 감시·감독	162	529	1,497	2,010	2,143	1,685
주주행동	473	736	922	897	448	703
감시·감독과 주주행동	N/A	(84)	(265)	(592)	(441)	(117)
지역사회 투자	4	4	5	8	14	20
합계	639	1,185	2,159	2,323	2,164	2,290

주) 감시·감독과 주주행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산은 1997년부터 구분가능한테 이중계산 되었기에 차감하였음.

출처: Social Investment Forum Foundation

이와 같이 미국시장에서 SRI펀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데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투자에서 수익성 이외에 공익성을 강조한 결과로 공적 연기금의 SRI투자 규모는 전체 SRI펀드의 약 52.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연합(UN)도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갖고 2006년 4월에는 캘퍼스,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영국대학교원연금(USS) 등 해외 대형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하도록 주도했다. 최근에도 UN의 주도 하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뉴욕공무원연금 등 전 세계 30여개 금융기관장들이 서명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2008년 3월까지 마련해 각종 입찰이나 주식 상장 때 이를 준수하게 할 계획이다. 사회투자포럼(SIF)에 의하면 유럽의 SRI 자산은 3,600억 유로 이상이 되는데 역시 공적 연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반지(Avanza) SRI 연구에 의하면 2005년 6월말 기준 유럽에는 375개의 환경·사회·윤리관련 펀드가 241억 유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영국은 1999년 연금법 개정으로 SRI펀드 규모가 급성장해 80억 유로로 가장 많고, 프랑스 31억 유로, 이탈리아 27억 유로, 스웨덴 25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유로시프(EuroSIF)에 의하면 유럽의 SRI 자산규모는 2005말 현재 윤리요소 등을 고려한 핵심(Core) SRI는 1,050억 유로이고 주주권 행사 등 일반(Broad) SRI는 1조330억 유로이다.<sup>3)</sup> 핵심 SRI는 네덜란드가 연기금 PGGM에 힘입어 가장 규모가 크고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로시프에 의하면 국가별 규모의 차이는 시장의 역사나 초기 투자자들의 주주행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기타 국가의 SRI규모는 SIF에 의하면 2004년 6월 현재 캐나다의 148억 캐나다 달러, 호주가 76.7억 호주달러이다. 1999년 SRI펀드가 도입된 일본은 1천억엔 이상의 투자규모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IFC의 추정에 의하면 신흥국가들의 SRI자산은 2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SIF보고서 등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SRI펀드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머서투자컨설팅(MIC)이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5명 중 85명이 10년 안에 SRI펀드가 투자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응답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호주 윤리투자협회(EIA)의 조사에서도 현지 펀드매니저들의 약 70%가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경·사회·윤리경영 측면에서 최고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비영리 SRI 전문연구소인 윤리투자연구소(EIRIS)의 조사보고서에도 'FTSE 올 이머징 지수'에 포함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SRI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신흥시장에도 SRI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신흥시장 주식을 대상으로 한 SRI펀드의 성장도 예상된다. SRI펀드의 규모가 확장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SRI인덱스지수를 개발하고 SRI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하며 연금 사회책임투자법 등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SRI 인덱스지수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분석해 만든 지표이다. 미국 다우존스는 스위스의 자산관리회사인 SAM과 공동으로 1999년부터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영국에는 파이낸셜타임스 및 런던증권거래소가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이 FTSE4Good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MS-SRI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회책임경영 전문 투자컨설팅 회사인 KLD는 S&P500지수에다 지배구조, 환경보호, 지역사회공헌,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노력, 다각화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고 도박이나 술, 무기, 담배, 포르노업종을 제외한 DS400지수를 고안해냈다. DS400지수는 구체적으로 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250개, 비(非)S&P 기업 100개, 그리고 특히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50개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의 ESG정보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데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등은 법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1년 5월 현대화회사법을 통해 기업활동의 사회 및 환경적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연기금 운용에 ESG요소를 고려할 것을 규정한 법률도 나오고 있다. 영국은 2000년 7월 제정된 연금법안에서 연금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환경·사회·윤리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RI펀드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수익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ESG요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리스크 대응력과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이 높아져 더 높은 기업가치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선택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이나 인력시장에서도

사회책임경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책임경영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도 미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 100대 기업의 매출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보였고 수익률도 높은 것을 판명되었다. SRI펀드는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에 비해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DSI400지수의 수익률은 S&P500과 비교해 보면 설정 초기에는 저조한 반면 10년간 수익률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속가능

투자기법으로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 및 뮤추얼펀드가 벤치마크를 삼고 있는 DJSI 수익률도 모건스탠리 인덱스(MSCI World Index)의 수익률을 훨씬 능가했다. 유럽 사회책임펀드 수익률을 나타내는 FTSE SRI지수도 5년 이상 장기 투자에서는 일반펀드의 수익률보다 초과수익을 내고 있다.

### 3. 국내 SRI펀드 투자현황

환경친화적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2001년 삼성투신운용이 출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SRI펀드 ‘에코펀드’와 2003년 12월 CI투자증권이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 연대’(CCSR)와 공동으로 발매한 ‘SRI-MMF’는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후 2005년까지는 SH자산운용의 ‘Tops 아름다운SRI주식’이 유일한 SRI펀드였다. 그러다 2006년 하반기 들어 SRI펀드의 인기가 치솟으며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의 등장에 이어 하반기에는 농협CA투신운용의 ‘뉴아너스 SRI펀드’, 알리안츠 자산운용의 ‘기업가치향상 장기주식’, 대신투신운용의 ‘행복나눔 SRI주식’, 산은자산운용의 ‘산은SRI 좋은세상만들기주식’, 기은SG운용의 ‘기은SG 좋은기업바른기업주식’, 우리CS운용의 ‘프론티어 지속가능기업SRI주식’, 대우증권의 ‘마스터랩SRI좋은세상만들기’ 등이 잇달아 출시되었다. 이 중 알리안츠 자산운용의 ‘기업가치향상 장기주식펀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처럼 보유주식에 대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행사하는 기업지배구조펀드이다. 사모펀드인 우리투자증권의 ‘마르스제1호PEF’도 생표식품의 지분 24.1%를 취득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해 SRI펀드의 일종인 지배구조펀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 중 처음으로 2004년부터 기업지배구조형 펀드를 운용해 왔는데 2006년 하반기에는 1500억원 규모의 SRI투자형 펀드를 위탁운용할 자산운용사 3사를 선정해 투자자들의 SRI펀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 게다가 운용된 지 얼마 안 된 SRI펀드의 단기 수익률이 주식형 펀드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SRI관련 공모펀드가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도 안 되어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연기금을 비롯해 학계나 종교계 자금들을 중심으로 SRI펀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기금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로 투자하는데 매매에 따른 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 주가가 실망스러운 기업의 주식을 단순히 처분해 버리는 월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SRI펀드의 인프라 구축

국내에서는 SRI펀드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관계로 SRI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만 하더라도 2006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주주권 보호, 감사구조, 경영투명성, 경영성과 배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거래소 상장기업 633개사를 평가한 결과 평균 10개사 중 7개사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SRI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적다보니 SRI펀드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비슷해 펀드 간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SRI펀드가 주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별 비중도 비슷해 대형주 펀드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차별화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책임을 중시하는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다우존스지속가능지수(DJSI) 같이 기업의 사회책임을 총괄해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해 투자대상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SRI 기준이 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공해와 오염에 대한 통제 등 환경관련 리스크, 소외계층 고용 및 협력회사와의 합리적 신뢰관계 등 사회적 리스크, 경쟁의 공정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지배구조의 구축 등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SRI 기준에 맞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경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SRI펀드가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 편입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외 SRI펀드를 위해 국내 사회책임투자기업을 발굴해주는 컨설팅업체도 많이 있어야 한다. 현재 기은SG자산운용, 농협CA투신운용, SH자산운용, 우리CS자산운용 등 4개사가 환경을 기준으로 한 기업평가 및 등급책임기관인 에코프런티어의 기업평가 자문을 통해 SRI펀드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다 보니 펀드 간 종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개별 펀드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체 계량모형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체 리서치 및 조사 비용을 추가로 들여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

SRI펀드도 운용 목표를 수익률에 두면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 SRI펀드에 걸맞지 않는 기업의 주식이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편입된 후에 ESG요소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비중을 줄일 뿐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최근 SRI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특별한 종목 편입 제한 내용을 두지 않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5.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역할과 책임

SRI펀드는 펀드가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20세기 후반 이후의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펀드자본주의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SRI펀드 중에서도 단순히 ESG요소를 투자대상종목의 선정에 활용하는 것

이 아니라 경영계획 및 실행에 간여하여 기업의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펀드자본주의의 실익과 폐해의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와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펀드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주주행동주의의 표출은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SRI펀드의 주주권 행사 정도 및 방식도 SRI펀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공적 연기금이 중심이 된 펜션펀드(Pension Fund)는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 운용하며 주식 매도시 시장충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라는 연기금의 지배구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따라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기업지배구조문제에 대해서도 지나친 경영권 간섭보다는 주주제안 정도로 한정하는 편이다. 뮤추얼펀드는 배당정책 간여 등 이익배분에 대한 요구에서 연기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본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4)</sup>

이에 반해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자산운용에 제약이 적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특정인에 대해 반대표시를 하는 반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특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기도 하고 나아가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래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에 제약이 없는 헤지펀드와 달리 경영권인수 후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성격을 갖지만 최근 자금회수기간이 짧아지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내세워 경영권을 지나치게 압박함으로써 경영권 안정을 떨어뜨려 투자 및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장기 성장성을 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영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회를 이용해 조기에 투자수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리면 지배구조개선과 가치제고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경영권 개입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한 후 곧 처분해 버린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나 KT&G의 경영권에 개입했던 칼아이칸 측의 조기철수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투자수익을 우선시하는 펀드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다.

사회책임투자펀드에게 부여할 책임은 같더라도 실행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펀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적 연기금에 대한 지배구조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일반 펀드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자율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및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지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그리고 헤지펀드의 공격 및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내시장을 일시에 교란시키고 떠나면 후유증이 크다. 따라서 펀드의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장기적 투자목적, 투자계획, 투자일정 등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펀드의 주주권은 지배구조나 경영투명성 등 지속가능경영이 취약해 제대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만 발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권 개입 및 공격을 어렵게 하는 행정 및 입법조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를 우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SRI펀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앞당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우량기업이 양산될 것이다.

---

1) 본래 사회·환경·윤리(SEE)를 들었으나 기업지배구조(CG)가 강조되면서 ESG라는 용어가 동의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www.socialinvest.org](http://www.socialinvest.org)에서 “2005 Report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Trends

3) [www.eurosif.org](http://www.eurosif.org) 에서 “The 2006 European SRI Study” 참조.

4) 한편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고 상장사의 경우에만 임원선임, 해임,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 4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지분의 일정 수준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